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청기준 변경(안 제3조)

- 지원기준일 ⇒ 신청기준일
-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⇒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

나.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상향 조정(안 제8조)

- 보훈영예수당 월 15만원 ⇒ 월 20만원
- 사망위로금 15만원 ⇒ 30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9. 10. 02 ~ 10. 20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(기획담당관-1112, 2019.10.10.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담당관-1112, 2019.10.10.)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(주민복지과-5028, 2019.10.04.)
- 5) 법제심사 : 원안동의(기획담당관-2148, 2019.10.25.)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기획담당관-2794, 2019.11.07.)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지원기준일”을 “신청기준일”로, “주민등록상 주소를 둔”을 “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만원의”를 “20만원의”로, “15만원을”을 “30만원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<u>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<u>15만원의</u> 보훈영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하고, 해당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<u>15만원을</u> 지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<u>신청기준일</u> ----- <u>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</u> -----.</p> 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----- ----- <u>20만</u> <u>원의</u> ----- ----- ----- <u>30만원을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취

□ 국가보훈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

한다.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 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 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 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 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 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- ② ~ ③(생략)

□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

제12조(보상금) ① 보상금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한다.

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(先順位者)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,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5.21.>

1.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
2.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

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4.5.21.>

1.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,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사망한 경우

2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삭제 <2015.12.22.>

4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

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(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2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

다만,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9.15., 2012.2.17.>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
2. 제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4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-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9.15.>
 -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(4·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)의 보상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1.9.15., 2012.2.17.>
 - ④ 보상의 지급수준은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(告示)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⑤ 보상은 월액(月額)으로 하고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

- 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 15만원을 20만원으로,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

○ 관련조문

- 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의 보훈영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과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훈영예수당 15만원 ⇨ 20만원으로 상향 조정, 지급예정 인원 30명
- 사망위로금 15만원 ⇨ 30만원으로 상향 조정, 지급예정 인원 565명

나. 추계 결과 : 1,365,000천원

- 현재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: 565명
 - 보훈영예수당(연간) : 565명×200,000원×12개월 = 1,356,000,000원
- 사망위로금 지급 예상 인원 : 30명
 - 사망위로금(연간) : 30명×300,000원 = 9,000,000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군 자체수입(지방세 수입)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복지과장 고흥재
연락처	(033) 330 -2150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1,365,000	1,377,000	1,401,000	1,425,000	1,449,000	7,017,000
보훈영예수당		1,356,000	1,368,000	1,392,000	1,416,000	1,440,000	6,972,000
사망위로금	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	45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365,000	1,377,000	1,401,000	1,425,000	1,449,000	7,017,000
	지방세	1,365,000	1,377,000	1,401,000	1,425,000	1,449,000	7,017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